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91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1.

발의자 : 서영교 · 박희승 · 임오경

윤준병 · 위성곤 · 양부남

김문수 · 이성윤 · 박홍배

김태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 출연 및 협력 중소기업 지원,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,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취득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 다양한 세제지원 특례를 두고 있는데, 이 모든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.

그러나 대 ·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,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영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위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3, 안 제96조의3, 안 제108조제1항)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96조의3제1항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각각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한다) 또는 범인세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, 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.

④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 중 연구시험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기증한 자산의 「법인세법」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 기증한 자산의 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~ ⑧ (생략)

제96조의3(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)

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하여 이대를를 이차이(대통령

----- . -----

④ _____

—2027

13 12월 21일

1. *What is the primary purpose of the study?*

Digitized by srujanika@gmail.com

⑤ ~ ⑥ (원영과 끝음)
106.3 원영(원영)데크를 원영(원영)

설립 및 운영 원칙

卷之三

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 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 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. 1. · 2. (생략) ② · ③ (생략)	-----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--	--